

연결법인변경신고서

1. 연결모법인 기본사항

① 법인명		② 사업자등록번호	
③ 대표자성명		④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	

2. 연결법인의 연결사업연도

. . . ~ . . .

3. 변경신고 대상 연결자법인 명세

⑤ 번호	⑥ 법인명 ⑦ 사업자등록번호	⑧ 사업연도	⑨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	연결모법인의 출자비율(%)		⑫ 간주사업연도 적용(대상) 여부		⑬ 변경신고 유형	
				⑩ 직접출자 비율	⑪ 간접출자 비율	여	부	추가	배제
		. . . ~ . . .				여	부	추가	배제
		. . . ~ . . .				여	부	추가	배제
		. . . ~ . . .				여	부	추가	배제

4. 연결자법인 변경신고 유형별 명세

가. 연결자법인의 추가

⑭ 법인명	⑮ 사업자등록번호	⑯ 추가 사유	⑰ 추가사유 발생일	⑱ 연결납세방식 적용 최초 연결사업연도
		 ~ . . .
		 ~ . . .
		 ~ . . .

나. 연결자법인의 배제

⑲ 법인명	⑳ 사업자등록번호	㉑ 배제 사유	㉒ 배제사유 발생일	㉓ 배제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
		
		
		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20조의16에 따라 연결법인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연결모법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국세청장 귀하

첨부서류	연결자법인의 주주상황(부표2) (연결자법인이 추가되는 경우에만 첨부함)
------	--

작성 방법

※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는 연결모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1. ⑧사업연도란: 연결법인 변경신고일 현재 사업연도(연결납세방식을 적용 받기 전의 사업연도)를 적고,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간주사업연도를 적용받는 연결자법인은 간주사업연도를 적용받기 전 "본래사업연도"를 적습니다.
2. ⑨자본금 또는 출자금액란: 위 "1"의 사유발생일 현재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적고, 주식회사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 자본금 총액(연결자법인의 연결지배 여부 판단시 제외되는 우리사주 조합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은 제외)을 적습니다.
3. ⑩직접출자비율란: 연결모법인이 변경신고 대상 연결자법인에 직접 출자하고 있는 지분비율을 적습니다.
4. ⑪간접출자비율란: 연결모법인의 다른 연결자법인이 변경신고 대상 연결자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지분 비율을 적습니다.
5. ⑫간주사업연도 적용(대상) 여부란: 「법인세법」 제76조의8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3항에 따라 본래의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연결자법인으로서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연결자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받았거나("배제" 대상) 받아야 하는("추가" 대상) 법인은 "여"란에 "○" 표시하고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"부"란에 "○" 표시합니다.
6. ⑬변경신고 유형: 연결지배를 받는 자법인이 추가 된 경우에는 "추가"란에 "○" 표시 하고,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던 자법인이 연결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"배제"란에 "○" 표시합니다.
7. ⑭추가사유란: "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" 또는 "설립등기일부터 연결지배"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8. ⑮배제사유란: "연결지배를 받지 않음" 또는 "해산"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9. ⑯연결납세방식 적용 최초 연결사업연도란: ⑭추가사유가 "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"인 경우에는 추가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를 적고, ⑮배제사유가 "설립등기일부터 연결지배"인 경우에는 추가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를 적습니다.
10. ⑰배제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란: ⑮배제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을 적습니다.
11. 2024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연결자법인(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%를 보유한 법인) 외에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(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90% 이상 100% 미만을 보유한 경우)하고 있는 연결모법인이 해당 다른 내국법인에 대해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을 부칙 제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게 되어 같은 항 후단 및 「법인세법」 제76조의11제3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: ⑭추가사유란에 "2024년 1월 1일 당시 연결지배"로 적고, ⑯연결납세방식 적용 최초 연결사업연도란에는 2024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적습니다.